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, 국민의 해양경찰

# 제1차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(2024~2028)



2024. 3.

해양경찰청

# 목 차

│. 수립배경1
<ul> <li>□ . 국내 수상레저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···· 2</li> <li>1. 국내 수상레저 현황 ···· 2</li> <li>2. 해외사례 분석 ··· 7</li> </ul>
Ⅲ.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체계 ⋯⋯ 9
Ⅳ. 전략별 추진과제 10
1.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안전정책 추진       10         ① 규제정비를 통한 수상레저 활성화       10         ② 수상레저기구 KC안전인증 개발 및 법제화       11         ③ 수역별·기구별 특징을 반영한 운항규칙 세분화       12         ④ 수상레저 자율점검체계 마련을 위한 우수사업장 지정       13
2. 초연결 사회 그리고 참여·협력 네트워크 강화······· 14
⑤ 민관 협력 수상레저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
3. 스마트 시대 그리고 국민편의 증진 18
⑨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활성화18⑩ 수상레저안전 종합정보제공 모바일 앱 개발19⑪ 조종면허 전자채점 시스템 도입20⑫ 조종면허시험 응시자 편의제공21
(총괄표) 전략별 세부과제 추진 로드맵 22

### │. 수립배경

「수상레저안전법」	전부개정법률(	이 시행('23.6.1	1)됨에 따라	5년	단위
중장기 수상레저역	안전관리 기본:	계획의 수립·시	행에 관한 급	그거 [	가련

o 동법 제4조는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확보를 위해 5년 단위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·시행을 의무화함

제4조(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# □ 연단위 시행계획 수립의 한계로 체계적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

- 그간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은 1년 단위 해양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각 해경서 및 시·도 단위에서 매년 수립해 활용해 왔으나, 거시적 관점의 계획 부재로, 체계적 안전관리 로드맵 수립에 한계발생
- □ 기본계획은 수상레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최상위계획으로, 수상레저 안전정책의 기본목표, 방향 등을 제시
  - o 향후 해경서 및 시·도지사의 연도별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각 수역별 수상레저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필요

### □ 미래 수상레저 환경 및 국민수요에 충족하는 안전관리 정책 마련

 국내 수상레저활동은 레저시장 성장과 연계되어 꾸준히 다변화・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, 이에 따른 법・제도 정비 및 국민수요를 반영한 수상레저 안전정책 방향 모색

### □ 기본계획을 통한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조성 및 레저활성화 도모

o 중장기적 수상레저안전관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필요한 시책 들이 수상레저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

### Ⅱ. 국내 수상레저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

## 1 국내 수상레저 현황

### 1-1 제도적 환경

### □「수상레저안전법」전부개정 및「수상레저기구등록법」제정

- 수상레저에 관한 기본법인 「수상레저안전법」은 2000년 시행 이후
   다수의 일부개정을 거치며 복잡하게 구성되어 국민이 이해하기
   어렵고 법 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한계로 지적
  - \* 조종면허·안전준수·안전관리·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·검사 등 혼재
- 2022년 「수상레저안전법」에서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리 하여 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고, 전부개정을 통해 조종면허·사업 등 미비점 보완
  - \* (법안 발의) '20.12.15, (본회의 의결) '22.5.29, (공포) '22.6.10, (시행) '23.6.11

#### 〈 수상레저안전법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〉

구분	주요내용				
	• "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" 의무화				
수상레저안전법 (전부개정)	•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대여·알선행위 금지(형사처벌)				
	• 기상악화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				
	• 수상레저보험가입관리 전산망 구축				
	• 지자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업무에 대한 지도·감독				
수상레저기구의 등록	•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				
및 검사에 관한 법률 (제정)	•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무선설비·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				
	• 법인·사업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양벌규정 도입				

### □ 미래 수상레저 환경을 반영한 중장기 기본계획 필요성 증대

- 기존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 주체인 해양경찰청 및
   지방자치단체가 1년 단위로 매년 수립
- 수상레저 활동의 증가와 수상레저 환경 및 정부정책을 반영하여
   이전보다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계획 수립 필요

#### □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한 안전규제 완화 요구

- 수상레저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규제가 필연적이나, 과도한 규제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
-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한 기반조성은 국가의 의무이며, 효율적 안전규제는 이를 위한 전제요건
- ㅇ 수상레저 안전확보와 규제완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화 필요

### 1-2 사회·문화적 환경

### □ 경제성장과 여가시간 증가로 수상레저 향유 인구 증가

o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적인 것을 벗어나 차별화된 여가 선용을 원하는 계층이 등장하면서 수상례저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



○ 2000년도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시행 이후, 요트·고무보트·수상오토 바이 등 기구들이 본격적으로 다양화 · 고급화되면서 전국으로 확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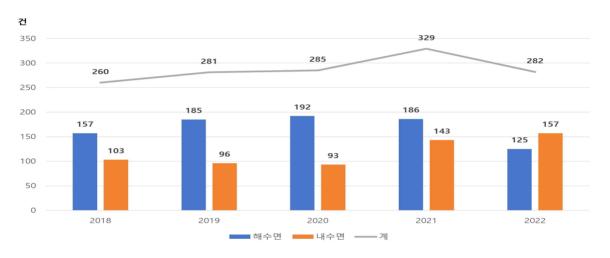




<'80년대 주요활동 기구> <'00년대 주요활동 기구> <'20년대 신종 레저기구>

#### □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꾸준한 유입으로 안전사고 지속 발생

지난 5년간 수상레저 사고는 2018년 260건, 2019년 281건, 2020년 285건으로 소폭 증가, 2021년에는 329건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2022년에는 282건으로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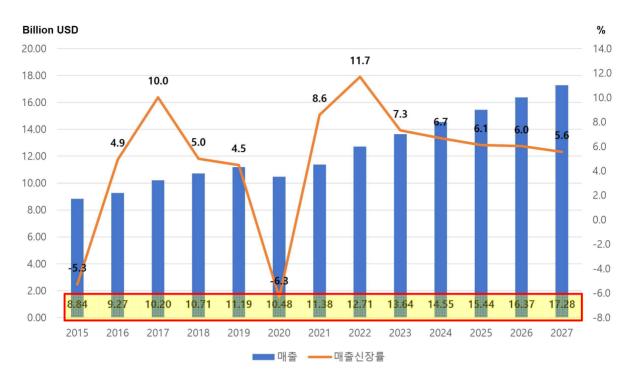
연도별 수상레저 사고신고 접수 현황 출처: 대한민국 공공데이터포털(www.data.go.kr)

 2022년 기준 사고발생 원인으로는 운항부주의(77건, 약 62%), 조종 미숙(17건, 약 14%), 선체결함(7건, 약 6%) 등으로 사고발생은 활동자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기본지식 부족에 기인

### 1-3 경제적 환경

### □ 전 세계적인 수상레저산업의 성장

 수상레저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이며, 세계 수상레저용품 시장규모는 2023년 매출이 136.4억 달러(약18조) 규모로 성장, 2027년에는 172.8억 달러(약23조) 에 달할 것으로 예상 세계 수상레저 매출신장률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역성장
 (-6.3%) 하였으나 이듬해 8.6%, 2022년 11.7%의 성장세 회복



세계수상레저용품 시장 규모 출처: 스태티스타(www.statista.com)

 한국의 수상례저용품 시장은 수상례저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나, 수상례저 활동의 확산으로 점차 증가 추세이며 2027년 4천만 달러(약530억)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

### □ 국민들의 여가지출 및 여가활동시간 증가

- 여가에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·시간적 여유는 레저활동 수요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, 국민의 문화여가지출율\*은 코로나19로 인해 소폭 감소(-4.23%)하였으나 2022년부터 다시 증가(4.7%) 추세
  - \* 전국 만 15세 이상 일반 국민 10,000여명 여가지출비용 조사(매년) / 문화체육관광부
- o 2022년 기준 한국의 문화여가지출률은 월평균 168,837원이며, 여가 시간은 요일평균 4.2시간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지속 증가
  - \* 하루 24시간 중 여가시간비율은 17.9%로 OECD 33개 국가 중 28위에 해당

### 1-4 기술적 환경

### □ 수상레저산업 발전에 따른 다양한 수상레저기구의 출현

- 수상레저활동의 다변화로 수상레저기구 또한 다양화되고 있으며,
   이러한 추세는 수상레저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예상
- ㅇ 신ㆍ변종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

#### 〈 신종 및 변종 수상레저기구 예시 〉

Power surf board (파워서프보드)	Subwing (서브윙)	Flying boat (플라잉 보트)	Seabreacher (씨브리쳐)
<ul> <li>서프보드 하부에 전기모터 장치 포함된 날개를 부착하여 모터 추진력으로 수상에서 부양한 형태로 탑승</li> <li>무동력기구에 동력장치를 결합한 형태</li> </ul>	- 모터보트 등이 수상에서 견인하는 날개 형태의 보드를 이용자가 수중에서 잡고 스노클링 - 견인수상레저기구와 수중레저 활동이 결합한 형태	- 공기주입식 보트에 행글라이더의 구조의 날개를 결합하고 이를 모터보트 등이 견인하여 수상 주행 및 비행 가능 - 행글라이더와 유사한 레저기구	- 모터추진 보트 형태의 신종레저기구로 일시적으로 잠항할 수 있고 수면 위로 짧은 시간 도약 가능함 - 반잠수 스타일 제트스키 레저기구

### □ '디지털 사회로의 전환'에 따른 수상레저 행정서비스 개선

- ICT 기술의 발전, 스마트폰 이용의 보편화 등으로 사회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비대면 · 디지털 정책환경 도래
- 수상레저 행정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디지털로 쉽게 이용할 수
   있도록 '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' 고도화 사업 완료('23.11월)
  - \* (기간) '21~'23년, (비용) 약 40억원, '23년 보험가입관리전산망 구축

### 2 해외사례 분석

### □미국

- 정부의 역할은 후원 또는 지지의 형태로 일부 제한적이며, 민간
   주도로 수상레저안전 관련 계획이나 활동 추진
  - 연방정부 차원의 개입이 없으며 주정부의 제한적 참여
  - \* (테네시주 ) 보트운행을 위해서는 주에서 발급한 보트안전교육 이수증 소지 의무
  - \*\* (사우스다코다주 ) 보트 소유운항자는 미국해안경비대의 교육프로그램 수료 권장
- o 민관 협의체인 수상안전협의회가 실직적 안전관리 업무 수행
  - 중장기 계획인 수상안전실행계획(2023-2032) 수립\*, 수상안전 및 익사예방에 대한 전국적 공조체계 구축
  - \* 주정부·지역공동체 등이 자체 수상안전실행계획 수립토록 가이드라인 제시

### □ 일본

- 국**토교통성 산하 해상보안청이 수상레저안전 업무 총괄기관**으로서 2023년 제5차 교통비전(5개년)에 해양레저 안전관련 사업 제시
  - 플레저보트 기관 고장·조종경험 적은 자를 위한 대책
  - 안전에 관한 이해 · 교육을 위한 개인과 단체와의 협동 대책
  - 해상보안청 직원들의 현장지도체제 강화 대책 제시
- ㅇ 공익재단법인 형태의 '마린스포츠재단', '하천재단'등 운영
  - 주요사업으로 친수사업, 안전 이해·교육사업 등

### □ 호주

- 공공(중앙·지방정부)과 민간의 공조를 통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추진
  - 중앙정부 차원의 수상레저안전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
  - \* 의료, 보건, 복지시스템과 더불어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소관
  - 지방정부는 각 주마다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
  - \* (빅토리아 ) 수상안전전략 '21-'25 / (뉴사우스웨일즈 ) 수상안전지침 등
- o 수상안전 확보를 위한 **정부와 민간의 협력활동**이 활발하게 전개
  - 민관공동기구로 호주수상안전위원회(호주수상안전전략, 익사자 50% 감소 목표, 5개 영역 설정)가 수상안전에 관한 자문역할 수행
    - \* 익사사고 근절을 위한 5개 영역 : 사람, 장소, 활동, 인구, 위험요소

#### □ 영국

- o 호주와 마찬가지로 공공·민간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 수행
  - 교통부 산하 해사연안경비청이 수상레저 안전업무 총괄, 안전 관리계획 수립 참고서로 해변안전관리 제작
    - \* 해변안전관리는 각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식의 자가진단을 제시, 해변안전 관련된 현행법 소개
- 민관협력단체인 수상안전포럼이 수상안전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수상안전사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 핵심역할 수행
  - \*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수상사고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간
- 민간단체인 왕립사고예방협회와 왕립인명구조협회가 수상레저 시설 관리 자격증, 인명구조 자격증 등 다양한 과정 운영

### Ⅲ.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체계

미 션

###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

비 전

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, 국민의 해양경찰

정 책 목 표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안전관리 체계 확립

자율 & 편의 스마트 & 미래 민간 & 협력 안전의식 & 문화

추진전략	세 부 과 제
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안전정책 추진	<ul> <li>↑ 규제정비를 통한 수상레저 활성화</li> <li>ᄼ상레저기구 KC안전인증 개발 및 법제화</li> <li>↑ 수역별·기구별 특징을 반영한 운항규칙 세분화</li> <li>↑ 수상레저 자율점검체계 마련을 위한 우수사업장 지정</li> </ul>
초연결 사회 그리고 참여·협력 네트워크 강화	<ul> <li>⑤ 민·관 협력 수상레저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</li> <li>⑥ 내수면 지원센터 확충 및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</li> <li>⑥ 「수상레저 대제전」개최를 통한 저변 확대</li> <li>⑥ 수상레저안전 관련 단체 협업 강화</li> </ul>
스마트 시대 그리고 국민편의 증진	<ul> <li>②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활성화</li> <li>⑩ 수상레저안전 종합정보제공 모바일 앱 개발</li> <li>⑪ 조종면허시험 전자채점 시스템 도입</li> <li>⑫ 조종면허시험 응시자 편의제공</li> </ul>

### Ⅳ. 전략별 추진과제

### 전략]

###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안전정책 추진

### **1** 규제정비를 통한 수상레저 활성화

### □ 추진배경

- 국민의 시각에서 수상레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은
   규제로 인식, 안전관리 규정과 규제개선 간 이해충돌 발생
- ㅇ 수상레저 활성화와 안전관리의 균형적인 발전방향 모색 필요

### □ 추진내용

- (T/F 운영) 단발적 대응중심의 규제개선이 아닌 불필요한 규제 지속발굴・이행위한 수상레저과 內 규제혁신 T/F 구성・운영
  - \* 내·외부 위원으로 구성, 총리실 산하 '규제혁신추진단'과 규제개선 협의 지속
- o (규제 회의) 규제개선 소요파악·성과 점검 등 논의 위한 점검회의 정례화
- (대국민 의견 수렴) 수상레저 활동자·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중심 으로 과제발굴 위한 공모전 및 간담회 개최

### □ 추진계획

### 2 수상레저기구 KC안전인증 개발 및 법제화(R&D, '23~'26년)

### □ 추진배경

- 모터보트 등 4종의 안전검사 대상\* 외 **무동력 수상레저기구**, 신·변종 레저기구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할 기준 부재
  - \* 모터보트·세일링요트(20톤 미만), 고무보트(30마력 이상), 수상오토바이
- o 이와는 달리, 국내에서는 공기주입형 물놀이기구, 국외에서는 카누· 카약·서프보드 등의 안전인증기준 충족을 의무화

### □ 추진내용

- (인증기준 개발) 수상레저기구별(총 27종) KC안전인증 기준, 인증제도・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해 4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연구・개발
  - \* '24년 2년차 사업 진행 中, 년차별 계획에 따라 지속 개발
- (법제화 추진) 레저기구 수입·제조 시 위해도에 따라 제품 시험·검사,
   공장심사 등을 거쳐 KC인증마크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

#### 수상레저기구 KC안전인증 법제화 로드맵

- ✓ (개요) 수상레저 R&D 1년차 사업('23년)을 통해 도출된 KC안전인증제 법률 제·개정안을 토대로 의원입법 추진(대표발의 의원실 협의, 입법공청회 개최)
- ✓ (추진 시기) '24년 하반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원구성 종료 시 추진
- ✓ (입법 형식) 전부개정\* 또는 신규 법률 제정 \* 「수상레저기구등록법」 전부개정(잠정)
- ✓ (하위법령 입법) '25년 상반기 법률안 공포를 목표로 하면서, 그 결과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 입안 및 법제처 심사(시행 '26년 목표)

		[ 순비:	수신	: N	생: <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/b>
구 분	′24년	′25년	′26년	′27년	′28년
수상레저기구 인증기준 개발					
KC안전인증 법제화					

### 3 수역별·기구별 특징을 반영한 운항규칙 세분화

### □ 추진배경

- 최근 파도 등의 영향을 작게 받는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추진\*
   추세와 더불어, 수역별 신종 기구가 등장\*\*하는 등 인프라 변화
  - \* 해수부 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('20년~'29년), 내수면 15개소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선정
- \*\* 내수면(인공파도 만드는 웨이크서핑보드), 해수면(잠항하는 돌고래보트)
- o 「수상례저안전법」 운항규칙의 경우, 해수면 중심 포괄적인 내용\* 위주이므로, 내수면 및 기구별 특성이 미 반영되어 고도화 필요
  - \*「해사안전법」의 항법 및 기상특보 시 활동제한 등 일반적인 사항 규정

#### 내수면 운항규칙 해외 사례

- ✓ (미국) US Inland Navigation Rules
- ✓ (유럽) CENVI-European Code for Inland Waterways
- ※ 영국의 경우, AINA(Association of Inland Navigation Authorities)를 통해 4,000마일 이상의 내륙 수로 관리



### □ 추진내용

- (규칙 마련) 미국·호주 등 선진국의 **수역별 구분된 운항규칙 분석**과 함께 **수상레저기구별 특성이 연계**될 수 있도록 **연구용역 추진**
- (의견 수렴) 수역별 안전관리 주체(해경서, 지자체) 및 레저활동자, 사업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운항규칙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
- 연구용역·수요조사 결과 바탕으로, 「**수상레저안전법」개정 추진**

		[ 준미:	수신	: N	9: <b>1</b>
구 분	′24년	′25년	′26년	′27년	′28년
연구용역 및 수요조사					
법령 개정					

### 4 수상레저 자율점검체계 마련을 위한 우수사업장 지정

### □ 추진배경

- o 레저사업 확대\*(사업장 증가, 신종기구 등장)로 인해 해경(해수면), 지자체 (내수면)의 직접적 안전관리 한계, 안전사고 예방 위한 대체수단 필요
  - \* '09년 837개소 → '23년 1,027개소(120% ♠), 전동서프보드 등 신종 기구 등장
- 단속을 통한 사후관리로는 일정 한계에 도달, **자체 예방 노력으로** 무사고 달성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'우수사업장' 제도 도입 필요

### □ 추진내용

- (기준 마련) '우수사업장' 선정기준(규모, 무사고 등) 및 체크리스트 마련
- (인센티브 제공) '우수사업장'에 대한 대국민 홍보, 안전검사 유예, 현판 제공 등 안전사고 방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으로 동기부여

【 유사 '우수사업장' 인센티브 사례 】

분 야	에너지효율향상	근로자 건강증진활동	위험성평가
주 체	한국에너지공단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인센티브	- 에너지진단 면제 - 해외 산업시찰 기회 제공 - ŒM Energy Management Leadershtp Award 신청 지원 ('16년, '17년 국내 사업장 2개소 수상)	-고용노동부 실시 건강 진단 및 건강증진 관련 분야 감독 유예 가능 -3년간 정보포상 우선 추천대상자 -건강증진활동 추진 비용 우선 지원	-산재보험료 20% 인하 -클린사업장 조성 보조금 천만원 추가 지원 -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요율 0.2p 감면

ㅇ '우수사업장' 신청절차, 기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법제화 추진

		【 준비:	추진	: 시학	생: <b>[ ]</b>
구 분	′24년	′25년	′26년	′27년	′28년
우수사업장 선정기준, 인센티브 등 마련					
우수사업장 반영 법령 개정					

### 초연결 사회 그리고 참여·협력 네트워크 강화

### 5 민·관 협력 수상레저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

### □ 추진배경

- 카누·서핑 등 동호회, 개인 레저활동 증가와 정비불량으로 인한 표류 사고 증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자율적 민간주도 안전관리 필요
  - \*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의 높아진 안전욕구 충족을 위해 민관 협력체제 마련

### □ 추진내용

### □ 수상레저 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현장에 적합한 정책 마련

(자문위 구성) 기구별 동호회, 서핑・요트협회, 학계,
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「수상레저안전정책자문위」발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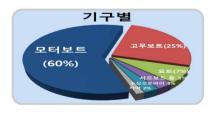


\* 중앙(본청)과 지역별(지방청) 협의체 구성(년2회 정례회의 개최)

### ② 활동자 중심의 민간 자율 예인체계 구축

○ (표류 사고) 레저기구 기관고장·연료고갈 등으로 인한 **단순표류 사고가** 지속 발생('21~'23년 1,993건)중이며, 경비함정 견인증가로 치안공백 발생

【표류사고 발생현황】







(통계현황: '23년 613건)

 (자율 예인체계) 모터보트・카약 등 동호회 대상 간담회・교육을 통해 자체 안전교육(기구점검 등), 예인 네트워크 등 활동자 중심의 예인체계 구축

		【 준비:	추진	: 시학	ਸ: <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/b>
구 분	′24년	′25년	′26년	′27년	′28년
수상레저안전자문위 발족 및 운영					
민간 자율적 예인체계 구축					

### 6 내수면 지원센터 확충 및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

### □ 추진배경

- 내수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지자체 공무원의 인력, 현장집행력
   부족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적 안전관리 지원체계 마련
  - \* 지자체 지원요청 시 경찰서 직원 차출 형식에서 상시적 지원체계로 개선 필요
- o 지자체 수상례저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발령 및 업무겸직(재난 관리 등)으로 인한 안전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 역량강화 필요

### □ 추진내용

### □ 내수면 안전관리 지원강화를 위한「수상안전지원센터」확충

- o (추가 설치) 현재 운영중인 **강원도**(사업장 최대등록, 159개소)에 이어 안전관리 수요가 많은 **경기도, 경북에**「**수상안전지원센터」신설** 
  - \* 주요임무 : 인력·장비 등을 활용, 상시 내수면 안전관리 업무지원(지도·단속, 교육)

### ② 지자체 수상레저 담당 공무원 및 안전감시원 역량 강화

- (지자체 공무원) 레저담당 공무원에게 필요한 법령, 지도·단속, 사업· 기구 등록 절차 교육을 위해「내수면 수상레저안전관리」교육 정례화
  - \* 장소/대상 : 해양경찰교육원(3일과정) / 30명(1년 미만 담당공무원 필수 이수)
- o (안전감시원) 수상레저 성수기(6~9월) 사업장 안전점검, 음주운항 등 안전관리를 위해 **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안전감시원 교육지원** 
  - \* 안전위해요소 감시 및 채증요령, 인명구조법 등 교육(수상안전지원센터 주관)

		[ 순미:	수신	: N	a:]
구 분	′24년	′25년	′26년	′27년	′28년
교육과정 정례화 (매년시행)					
수상안전지원센터 확충					

### 7 「수상레저 대제전」개최를 통한 저변 확대

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미래 해양레저 · 관광 트렌드는 휴식 · 힐링 · 건강 등이 중심이 될 전망, 체험과 볼거리가 어우러진 「수상레저 안전스포츠제전」개최\* 추진
  - \* 현행 「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」를 카누, 카약 등 동호인 참여 대회로 확대 개편

#### 참고: 해수부 주관 제15회 해양스포츠제전('22년, 군산)

- ✓ (개요)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매년 각 지자체의 유치 신청을 받아 개최, 요트· 핀수영·카누 등 경기와 레저기구 체험 실시(국비 등 약 15억원 소요)
- ✓ (효과) 선수, 관광객 등 10만명 이상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







### □ 추진방안

- (기본계획 마련) 해수부 및 지자체 유사 행사와의 차별화를 위한 대회운영, 프로그램 구성 등 내부 검토 및 외부 자문\*을 통해 기본계획 마련
  - \* 기존 대회 분석 및 타부처 사례 검토를 통한 특화·차별성 확보(필요시 연구용역)
- (예산 마련) 지자체·단체 대상으로 대회 개최를 통한 수상레저 저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감대 형성, 대회 예산 지원방안 협의

### 수상레저 안전스포츠제전 프로그램(안)

- ✓ (대회) 전국 요트대회, 동호회별 카누·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대회
- ✓ (체험) 카누, 카약, 서프, SUP 등 레저기구 체험 및 수상안전교육 등
- ✓ (행사) 레저기구 전시회(포토존), 요트숙박, 문화예술공연 등

		[ 운미:	수신	: N	8: <b></b> ]
구 분	′24년	′25년	′26년	′27년	′28년
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마련					
대회예산 확보 및 개최					

### 8 수상레저안전 관련 단체 협업 강화

#### □ 추진배경

- o 다양한 신종레저기구의 등장, 안전기준 마련 요구 속에서 법·제도 만으로는 현행 **수상레저 환경의 변화 추세를 따라가기에 한계** 
  - \* 신종레저기구 검사기준, 인증제도 개선에 대한 선제적 연구·관리 전담기관 필요
  - \*\* 국가기술표준원(산업부), 소방산업기술원(소방청)은 인증제도 전담 관리
- 수상레저 관련 단체(면허시험, 안전검사 등 대행) 역할을 재정립하여
   안전관리 및 레저산업 동반 발전을 위한 기능 강화 필요성 대두

### □ 추진내용

- (국가위탁사무 재정립) 수상레저 대행기관별 각 사업에 대한 **통일된 기준**을 재정립하여 국가 위탁사무(면허시험·안전검사 등)에 대한 **공정성 확보**
- o (역할 조정)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한 법정단체 및 민간단체 협업을 통해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기능 조정
- (수행사무 추가발굴) 전문기관 외에는 수행이 불가능한 "수상레저 기구 인증제" 개발(세부과제2)에 따른 단계적 업무 확대 추진



전략3

### 스마트 시대 그리고 국민편의 증진

### 9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활성화

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이 레저사고 대부분이 안전불감증(운항부주의, 정비불량 등)에 의해 발생하나, 수상레저 안전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경로 부재
  - \* (현황) 해양경찰서 단위 대인 방식, 인쇄물 등 오프라인 대면 홍보 위주

#### □ 추진방안

- (원스톱(One-stop) 서비스 온라인 시스템) 법령·안전정보 등 수상 레저 관련 모든 정보를 한번에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  - \* 현재 운영중인 '수상레저종합종보시스템' 고도화 지속 추진



○ (안전관리 정책 수립) 축적된 데이터는 단순 정보제공이 아닌 분석· 가공하여 수상레저 안전관리 정책 수립시 활용

		【 준비:	추진	: 시	껭:
구 분	′24년	′25년	′26년	′27년	′28년
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구축					
안전관리 정책 수립					

### 10 수상레저안전 종합정보제공 모바일 앱 개발

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ㅇ 수상레저 관련 정보는 웹 기반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운영
- o 수상레저 활동신고, 구조요청, 수상레저 활동 위치 관련 신고 및 정보 취득을 강화하기 위한 수상레저안전 모바일 앱 개발 필요

#### □ 추진방안

- o 해수면 및 내수면의 **수상레저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**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·운영
  - (주요 콘텐츠) 수상레저 주요 법령, 기구별 안전수칙, 사고예방 동영상 등
  - (주요 기능) 수상레저 금지구역 및 사고다발지역 진입 시 알람 및 안내 문자 발송, 위급상황 시 구조요청 등
  - (신고 기능) 근·원거리 수상레저 활동, 기상특보시 활동 신고 등



		I 판미	·	· _ ^	6. III 1
구 분	′24년	′25년	′26년	′27년	′28년
수상레저안전 모바일 앱 개발					

### 11 조종면허시험 전자채점 시스템 도입

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조종면허 실기채점을 전자화하여 시험관의 주관에 의존하는 기존 실기채점 방식의 취약점을 탈피하고 객관성을 확보하여 시험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 필요

#### □ 추진방안

- 전자채점에 기반한 조종면허 평가시스템 개발, 설치, 시범 운영
   및 개선제도 운영 추진
  - (실시간 전자채점 시스템 개발) 무선데이터 통신망, 센서 등 활용
  - (전자채점 인프라 구축) 조종면허 시험장에 통신망 구축, 센서 등 설치
  - (전자채점 운영 시스템 개발) 채점용 전자패드, 거리측정, 항적 구현 등
  - (확대 운영) 선별된 시험장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 시험장 확대 운영



		【 준비:	추진	!: 시	행:
구 분	′24년	′25년	′26년	′27년	′28년
전자채점 시스템 개발					
전자채점 확대 운영					

### **12** 조종면허시험 응시자 편의제공

#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전국 조종면허 PC시험장(23개)이 해양경찰서 민원실 등에 위치하고 있어 내륙지역 거주자·고령자는 원거리이동으로 시험응시에 불편
  - \* 면허 취득자 연평균 증가율 8.6% ♠, PC시험 가능인원 117명으로 한정
- 「수상레저안전법」제정 이후 **신체 장애인**이 조종면허를 취득하였 지만 장애유형·정도별 특성 고려한 **편의시설 및 제도 미비**

#### □ 추진방안

#### □ 조종면허 온라인 시험 시스템 마련

- o (온라인 시험) 장소, 응시인원(동시접속 1만명)에 제한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해양경찰청 시험서버에 접속하여 온라인 시험 시스템 마련
- (공정성 강화) 감독관의 업무\*를 안면인식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
   하여 신분증 확인 시간 단축 및 사각지대 없는 화상감독
  - \* 조종면허시험 응시자 신분증과 얼굴 대조, 부정행위 방지, 시험절차 안내 등

### ②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종면허시험 편의제공

o (지원센터 설치) 신체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, 운동능력 측정, 면허시험, 안전교육까지 면허취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실시



		[ 운미:	수신	· ^\	ö.
구 분	′24년	′25년	′26년	′27년	′28년
온라인 조종면허 시스템 구축					
장애인 지원센터 설치					

## 

추진전략	세부과제	구분	′24	′25	′26	′27	′28
	① 규제정비를 통한 수상레저 활성화	규제개선 T/F 구성(필요시 매년 구성)					
		규제개선 회의 (매년 시행)					
		대국민 의견 수렴(매년 시행)					
1	② 수상레저기구 KC안전인증 개발	수상레저기구 인증기준 개발					
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	및 법제화(R&D, '23~'26년)	KC안전인증 법제화					
안전정책 추진		연구용역 및 수요조사					
	③ 수역별·기구별 운항규칙 세분화	법령 개정					
	④ 수상레저 자율점검체계 마련을	우수사업장 선정기준, 인센티브 등 마련					
	위한 우수사업장 지정	우수사업장 반영 법령 개정					
	⑤ 민·관 협력 수상레저 안전관리	수상레저안전자문위 발족 및 운영					
	네트워크 구축	민간 자율적 예인체계 구축					
	⑥ 내수면 지원센터 확충 및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	교육과정 정례화(매년시행)					
2 초연결 사회		수상안전지원센터 확충					
그리고	①「수상레저 대제전」개최를 통한 저변 확대	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마련					
참여·협력 네트워크 강화		대회예산 확보 및 개최					
	⑧ 수상레저안전 관련 단체 협업 강화	관련 단체별 국가위탁사무 재정립					
		역할 조정 (법정단체 및 민간단체)					
		수행사무 추가발굴					
	⑨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활성화	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구축					
		안전관리 정책 수립					
3	10 수상레저안전 종합정보제공 모바일 앱 개발	수상레저안전 모바일 앱 개발					
스마트 시대 그리고	① 조종면허시험 전자채점 시스템 도입	전자채점 시스템 개발					
국민편의 증진		전자채점 확대 운영					
		온라인 조종면허 시스템 구축					
	12 조종면허시험 응시자 편의제공	장애인 지원센터 설치					